알아두어야할사항 출신 국가 차별

- 1 뉴저지 차별 금지법(LAD)은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차별과 괴롭힘은 난민, 이민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고용,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불법입니다. 이러한 차별에는 인종, 출생 국가, 문화 또는 언어를기반으로 한 불공정한 대우 또는 잘못된 인식이라도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생각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가 포함됩니다.
- 2 출신국가에따른차별이나괴롭힘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 고용주는 채용, 해고, 급여 등 고용 결정을 내릴 때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귀하의 고용주는 당신이 멕시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, 동료의 인종 비하 등 출신 국가에 따른 괴롭힘을 해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3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집주인, 부동산 관리자, 부동산 중개인 등 주택 제공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주택 제공자는 국적을 이유로 다른 세입자가 귀하를 표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합니다.
- 4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국적 차별이나 괴롭힘은 불법입니다. 쇼핑 센터, 레스토랑, 상점, 정부 기관,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실제 또는 인지되는 국적을 기반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레스토랑은 특정 "외양"을 지키고자 외모와 억양에 따라 귀하를 뒷자리에 앉힐 수 없습니다.
- 5 LAD법은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나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. 난민, 이민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출신 국가나 인종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병원은 태어난 국가 또는 귀하가 최근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생각하여 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LAD법 위반 신고, 차별 불만 제기 또는 LAD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거나 1-833-NJDCR4U (1-833-653-2748)로 전화하세요. DCR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저지의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LAD법을 시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<u>여기</u>를 클릭하세요.

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NJCivilRights.gov 를 방문하거나 1.833.NJDCR4U로전화하세요.



NJ CIVIL RIGHTS -@Civil Rights NJ #StandUp Against Hate

